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701

제출일자 : 2025. 5. 29.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천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립목적과 재단의 사업(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안 제5조)

다. 정관 기재사항(안 제6조)

라. 임원 및 이사회 구성(안 제7조부터 제10조)

마. 출연금의 교부(안 제11조)

바. 수익사업 및 사업의 위탁(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안 제14조)

아. 지도·감독, 공무원 파견(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4) 「민법」 제32조

5)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나. 예산조치: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정

다. 합의기관: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2025. 2. 21. ~ 2025. 3. 13.)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별도첨부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금천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금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자원의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업
2.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사업
3.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4. 지역사회복지 증진 사업
5. 사회복지분야 관련 조사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간 교류 활

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7.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센터 등 복지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발생 시 긴급 지원

9.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의 출연재산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관에 따른다.

③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 및 그 밖의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출연금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와 그 산하 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④ 구청장이 재단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공무원 파견) 구청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재단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금천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 인건비, 운영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출연기준액 확정 ·시행 계획(서울시 방침- 2016.11.18.)

- 기본재산 출연기준

부 서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복지본부 소관부서	2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없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기본재산	2,000,000	-	-	-	-	2,000,000
	○ 사무관리비	114,000	-	-	-	-	114,000
	○ 행사운영비	7,000	-	-	-	-	7,000
	○ 업무추진비	2,000	-	-	-	-	2,000
	○ 전산개발비	65,000	-	-	-	-	65,000
	○ 시설비	310,000	-	-	-	-	310,000
	○ 자산취득비	131,422	-	-	-	-	131,422
	○ 인건비	288,040	1,189,717	1,228,502	1,268,550	1,309,905	5,284,714
	○ 운영비	40,668	124,952	127,976	131,072	134,245	558,913
	소계(b)	2,958,130	1,314,669	1,356,478	1,399,622	1,444,150	8,473,049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구비	자체재원	2,958,130	1,314,669	1,356,478	1,399,622	1,444,150	8,473,049
	의존재원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2,958,130	1,314,669	1,356,478	1,399,622	1,444,150	8,473,049

5. 작성자 : 복지정책과 박현숙(2627-1356)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奬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익법인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49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1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5. 1. 3.] [법률 제19893호, 2024. 1. 2., 일부개정]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민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